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 11. 26(금)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 나. 회부일자 : 2004. 12. 21(화)
- 다. 상정일자 : 2004. 12. 23(목)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 12.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4년 6월까지는 월1회 휴무를 하고, 7월부터는 월2회 휴무를,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을 휴무하게 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 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 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18:00로 함.

(안 제13조의 1)

-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가. 본 조례는 집행부 지휘부와 평창군 직장협의회간 사전의견 조율없이 제출되어 평창군의회가 2004년 7월 22일 제11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수정의결 내용은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다"를 종전대로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것을 종전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사유는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과 연가일수 축소는 전면적인 토요일무제 실시 후 성과를 분석한 후 필요하면 그 때 가서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주문으로 보류시켰던 것입니다.

나. 금번 조례의 쟁점사항은 첫째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과 둘째 연가일수 1~2일 축소 조항이 되겠습니다.

○ 첫째 쟁점인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은 우리군을 제외한 도내 전체 시군이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군을 찾는 민원인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현실을 볼 때 1시간 연장근무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 두번째 연가일수 1~2일 축소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군수와 직장협의회 주장, 근무행태, 공직과 기업의 복지수준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관계법령 검토

- 가)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동법시행령으로 근무시간 연가일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르면 되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은 근무시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법의 근거가 없어 적용할 수 없고 그간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이 어려움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 1항과 동법 59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 제49조 제1항 : 1주간의 노동시간은 휴가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2조 제1항 :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9조 :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군수와 직장협의회 주장

가) 군수의 주장

- 토요일 휴무실시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연장과 연가일수 단축 필요
 -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11월~익년 2월)
 - 연가일수 1~2일 축소

나) 직장협의회주장

- 산불, 재해복구 등 각종 비상근무와 당직근무등 국가공무원과 근무여건이 상이함에도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가일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연가일수 축소는 안 된다는 주장.

3) 근무형태 (근무시간 개념)

토요일 휴무실시에 따른 근무시간 여건 변화를 보겠습니다.

가) 줄어드는 근무시간 (전면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 52회(토요일) × 4시간 = 208시간

※ 2005년도 줄어드는 근무시간 총 152시간

나) 늘어나는 근무시간

○ 동절기 4월 × 25일 × 1시간 = 100시간

○ 공휴일 축소(예정) 2~3일 × 8시간 = 16~24시간

○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3~4일 × 4시간 = 12~16시간

[최대 140시간]

다) 결과적으로 근무시간으로 볼 때 8일 4시간(총 68시간)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주5일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의 효과는 크지 않음을 볼 때 이와 연계하여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년도	줄어드는 근무시간	늘어나는 근무시간	효 과
2005년	152	92	62(7.5일)
2006년	208	140	68(8.5일)

4) 공직사회의 복지정책

가) 연가일수는 공직자의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가나 토요일휴무는 공직자의 사기진작, 개인의 능력개발기회 부여, 사회참여 이해의 폭 증진 등 공무능력을 배양하고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축소만 할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항으로 의회에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접근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 일반기업체를 볼 때 자녀대학등록금, 전세자금, 자녀 외국어무상교육, 본인 고급학원비, 1년 이상 장기해외연수, 25일 정도의 연가 등 실질적 복지는 공직사회와 비교할 수 없는 양질의 시책으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생산성을 배가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음은 공직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양질의 복지는 곧 양질의 노동생산성을 낳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매스컴을 통하여 많이 접하고 있는 게 현실일 때 우리 공직사회도 양질의 복지로 사기를 진작시켜 공직내부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그 활력의 에너지가 주민의 복지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 사료됩니다.

- 본격적인 전면 토요일무는 2005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연가일수 조정은 공직내부의 사기문제를 고려하여 현행제도를 좀 더 운영하여 본 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기업체 근로자의 근로여건, 지역경제 등과 연계하여 종합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질의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개정 필요성이 무엇인지? ○ 현행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처리와 관련 타 자치단체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유관기관과의 근무시간 혼선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년 12월 23일

제안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사유

- 제18조 연가일수 축소는 본격적인 토요일무제가 실시되기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

2. 주요골자

-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란을 현행대로 함(안 제18조 1항).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의 제1항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 직 기 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3월이상 6월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4일</td></tr> <tr><td>6월이상 1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7일</td></tr> <tr><td>1년이상 2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0일</td></tr> <tr><td>2년이상 3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3일</td></tr> <tr><td>3년이상 4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6일</td></tr> <tr><td>4년이상 5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9일</td></tr> <tr><td>5년이상 6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22일</td></tr> <tr><td>6년이상</td><td style="text-align: center;">23일</td></tr> </tbody> </table>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p>제18조(연가일수) ①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 직 기 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3일</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6일</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9일</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12일</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14일</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17일</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20일</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21일</td></tr> </tbody> </table>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	3일	-----	6일	-----	9일	-----	12일	-----	14일	-----	17일	-----	20일	-----	21일	<p>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p>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	3일																																					
-----	6일																																					
-----	9일																																					
-----	12일																																					
-----	14일																																					
-----	17일																																					
-----	20일																																					
-----	21일																																					